

의안 번호	제 3674호
----------	---------

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09월 03일, 오강현 의원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09월 1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09월 19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09월 19일

2. 개정이유

-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 근거가 되는 조례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근거 조례명 조문 정비(안 제6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의회 사무직원 정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 명칭이 「김포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」에서 「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로 2023.12.29.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화하려는 것으로, 입법체계상 타당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주문사항 : 없음

11. 첨부서류 : 원안 붙임

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”를 “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 직원의 정원은 「 <u>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</u> 」로 정한다.	제6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 직원의 정원은 「 <u>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</u> 」로 정한다.